



대한체육회



수신자 시도체육회장

(경유)

제목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 안내

1. 관련근거

- 가. 시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 제16조(후보자의 자격) 제1항 제1호
“단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제1항과 상이할 경우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른다”
- 나. 시군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 제16조(후보자의 자격) 제1항 제1호
“단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제1항과 상이할 경우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른다”

2.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허가(2022.11.11.)에 따라 정관 개정 허가 사항 중 임원의 결격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.

3. 이에 2022년 지방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추가 반영되어 안내하오니, 귀 체육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향후 대한체육회 회원시·도체육회규정 개정 시 별도 안내(지방체육회장 선거 이후)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사항

-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단서조항 명시(“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”)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(제11조의5제4호, 제5호) 반영하여 임원 결격사유 추가
-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관리단체로 지정한 회원단체(회원종목단체, 회원시·도체육회)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추가

행정사항

- 소관 시·군·구체육회에 내용 전달 및 안내

붙임: 1.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주요내용 1부

